

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2002 - 4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2. 10. 17.
제안자 : 정화석의원 외 4인

개정이유

“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”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
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.

주요골자

-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함(안 제49조)

개정근거

-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정한다.</p>	<p>제49조(현행과 같음)<u>부위원장과</u> </p>